

# 南北會談 推進經過(Ⅲ)

(南北體育會談)

1994. 10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 目 次

1.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 .....	3
2. '84 LA올림픽 單一팀 構成을 위한 南北體育會談 .....	13
3. '88 서울올림픽 관련 IOC 仲裁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23
4. '90 北京 아시안게임 單一팀 構成을 위한 南北體育會談 .....	31
5. 주요 國際競技大會 單一팀 구성·참가를 위한 南北體育會談 .....	55
6. 제 41 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 실무위원회 會議 .....	81
7.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單一팀 실무위원회 會議 .....	89



# 1.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



##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

- 第 1 次 會議 (1979. 2.27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第 2 次 會議 (1979. 3. 5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第 3 次 會議 (1979. 3. 9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第 4 次 會議 (1979. 3.12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成 立 經 緯 》

- 1979. 2.20      北韓體育指導委員會 위원장 김유순 · 北韓卓球協會 회장 김덕준, 朴鍾圭 대한체육회장 · 蔡榮喆 대한탁구협회장에 게 放送書翰 발송
  - 제35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1979. 4.25~5. 5, 평양)에 남북한 單一팀 構成 · 出戰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탁구협회 대표접촉 제의
    - 일시 : 1979. 2.27 오전 10시
    - 장소 : 판문점
  
- 1979. 2.24      朴鍾圭 대한체육회장 · 蔡榮喆 대한탁구협회 회장,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개최 수락 對北 放送通知文 발송



《 第1次 卓球協會 會議 : 1979. 2.27,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간에 卓球單一選手團 구성 문제의 협의를 계기로 남북한간에 모든 종목에 걸쳐 體育交流 실현 기대를 표명</li> <li>○ 卓球單一選手團 구성에 관한 基本立場 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탁구단일선수단 구성문제는 우선 국제탁구연맹 규약의 정신준수 및 동규약의 조항에 합치되어야 함.</li> <li>② 단일선수단 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li> </ul> </li> <li>○ 南北韓 卓球單一選手團 구성에 관한 합의가 대진표추첨일(3.14)이 전인 3.12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 탁구협회측이 한국탁구선수단의 제35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참가를 보장하고 한국탁구선수단이 판문점 통과 동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부터 唯一팀 構成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하면서 절차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選手選拔問題 選手選拔은 가장 우수한 선수선발원칙으로 國際卓球聯盟의 순위사정위원회가 발표한 개인등급 사정에 들어있는 우수선수를 우선적으로 뽑고 나머지는 양측에서 절반씩 같은 수로 하여 모두 18명의 선수를 선발</li> <li>② 共同訓練問題 평양에서 공동훈련을 하며, 남측선수들에게 평양에서의 모든 생활 편의제공</li> <li>③ 選手團 構成問題 선수단 단장은 남북 각기 1명씩 공동단장제 채택</li> <li>④ 選手團 名稱 고려선수단으로 호칭</li> </ul> </li> </ul>

《 第2次 卓球協會 會議：1979. 3. 5,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의 體育交流가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면 국제경기에서의 단일 선수단 출전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볼 때 남북간의 體育交流의 일환으로 單一選手團 構成問題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li> <li>○ 單一팀 構成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선수단 구성문제에 관한 쌍방간의 협의가 韓國卓球選手團이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기득권에 영향을 미칠수 없으며, 北韓卓球協會는 한국탁구선수단의 동대회 참가를 보장해야 함.</li> <li>- 제35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대진표추첨일정이 3.14, 3.15일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또한 單一選手團의 선수선발 및 훈련을 비롯한 제반문제를 고려, 단일탁구선수단 구성문제는 늦어도 3.12까지 합의되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唯一팀을 구성하는 원칙에 먼저 합의할 것만을 고집하고 唯一팀제의의 의의만을 강조하는데 치중하면서 합의서 초안 제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 意 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양에서 열리는 제35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민족통일팀을 구성·출전</li> <li>2. 選手選拔 原則과 方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우수한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원칙, 가급적으로 양측에서 평등하게 선발하는 원칙을 균형있게 적용</li> <li>2) 國際卓球聯盟 순위 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등급 순위에 들어있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발</li> <li>3) 이외의 선수들은 양측에서 절반씩 같은 수로 선발</li> <li>4) 선수명단은 각각 해당한 탁구협회가 작성하여 서로 교환·확인</li> </ol> </li> </ol>

우 리 측	북 측
	<p>3. 共同訓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훈련은 평양에서 실시</li> <li>2) 공동훈련 장소는 평양체육관</li> <li>3) 공동훈련용 기자재는 동대회에서 사용할 것과 똑같은것으로 북측이 보장</li> <li>4) 남측선수들에게 편의제공</li> </ol> <p>4. 共同訓練과 競技에 참가하는 전기간 남측인원들의 생활조건 무료보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숙소는 「보통강여관」</li> <li>2) 치료는 조선적십자병원 전담</li> <li>3) 교통 및 운송수단 제공</li> </ol> <p>5. 選手團 構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장은 공동단장제, 각각 1명씩</li> <li>2) 전문가, 지도원 및 과학일군, 의료일군 수는 쌍방 합의</li> </ol> <p>6. 동대회기간에 진행할 國際卓球聯盟 總會에 참가할 대표들을 양측에서 각각 2명씩 추천, 공동대표단 구성</p> <p>7. 名稱과 標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은 「고려탁구선수단」</li> </ol>

우 리 측	북 측
	2) 標識는 조선지도에 「고려」 3) 훈련복에 「고려」 4) 깃발은 앞면에 「고려」, 뒷면에는 「고려탁구선수단」 5) 휘장은 국기를 넣지않고 양측이 각각 3종씩 제작 함께 사용 6) 단체복, 훈련복, 경기복은 양측에서 각각 전체분을 만들어 한틀씩 제공, 번갈아 착용 8. 기타문제들은 공동단장들의 합의에 따라 해결

《 第 3 次 卓球協會 會議 : 1979. 3. 9,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單一팀 構成은 전반적인 南北韓 체육교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북측은 그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선수단이 평양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唯一팀 構成에 따른 제반절차문제 토의를 되풀이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3.12까지 단일팀 구성주장에 대하여 개별팀으로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비난</li> </ul>

《 第 4 次 卓球協會 會議 : 1979. 3.12,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壤大會의 대진표 추첨일정이 3.14, 3.15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과 또한 단일선수단의 선수선발 및 훈련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을 고려하여 단일선수단 구성문제는 늦어도 3.12까지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을 주지</li> <li>○ 國際卓球聯盟 회원국인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 기득권에 대한 先보장 요구를 북측이 거부함으로써 單一選手團 構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li> <li>○ 한국선수단의 平壤大會 참가를 보장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할 것을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회의시 제의한 「合意書」초안에 大韓卓球協會가 국제탁구연맹 회원으로서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으나, 이러한 기득권 인정은 쌍방이 唯一팀 構成合意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li> </ul>

\* 우리측은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득권을 먼저 보장한다는 공동성명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北韓側이 끝내 이를 拒否함으로써 아무런 合意도 이루지 못한 채 會談이 결렬



## 2. '84 LA올림픽 單一팀 構成을 위한 南北體育會談





'84 LA올림픽 單一팀 構成을 위한 南北體育會談

○ 第1次 會談 (1984. 4. 9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第2次 會談 (1984. 4.3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第3次 會談 (1984. 5.25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成 立 經 緯 》

- 1984. 3.30      北韓올림픽委員長 김유순 對南便紙
  - 제23회 LA올림픽경기대회 및 기타 국제경기대회에 유일 팀구성 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제의
  
- 1984. 4. 2      鄭周永 대한올림픽위원장 겸 대한체육회장 對北書翰
  - '84 LA올림픽대회, '86 아시아경기대회,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 수정제의
  
- 1984. 4. 6      北韓올림픽委員長 김유순 對南便紙
  - 남북체육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

《 第1次 南北體育會談：1984. 4. 9.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演說을 통해 북한측의 버마암 살폭발만행에 대한 시인·사죄와 崔銀姬·申相玉 양인의 즉각 송환을 촉구</li> <li>○ '84 LA올림픽대회 등에 南北韓 單一팀을 구성하는 문제와 단일팀 선수선발을 위한 남북체육교류 실시를 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演說을 통해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대결에 중지부를 찍고 민족의 염원 실현을 위해 유일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li> <li>○ 우선 제23차 올림픽대회에 유일팀 구성·출전문제와 체육분야합작 교류실시를 제시</li> </ul>
<p>〈會談 議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li> <li>○ 남북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li> </ul>	<p>〈會談 議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차 올림픽 경기대회와 그 이후 진행되는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할 데 대하여</li> <li>○ 北과 南이 체육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하여</li> </ul>
<p>〈單一팀 構成方法〉</p> <p>① 選手選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별 선발전을 통해 최우수선수 선발</li> </ul>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평양 등 남북한 지역에서 선발전 교환개최</li> <li>② 選手 및 任員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C 헌장 등에 준거 협의</li> </ul> </li> <li>③ 選手 管理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남북한 기존시설 최대 이용</li> <li>○ 필요시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 마련</li> </ul> </li> <li>④ 選手團 經費 : 공동부담</li> <li>⑤ 團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픽 표지말에 『KOREA』표기</li> </ul> </li> <li>⑥ 團歌 : 아리랑</li> <li>⑦ 選手團 呼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칭표기는 『KOREA』, 우리말로는 『대한』</li> </ul> </li> </ul>	

《 第 2 次 南北體育會談 : 1984. 4.3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演說을 통해 南北體育會談에서 버마사건과 崔銀姬·申相玉 납치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북측의 신뢰성과 성실성에도 관계될 뿐 아니라 단일팀 구성과정에서의 선수단 신변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li> <li>○ 북측의 單一팀 構成 제의가 지난 '79년 남북한 탁구회담에서와 같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li> <li>○ 금년 LA올림픽대회에 單一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목을 고려할 때 시일이 촉박할 것이므로 우리측 의제채택에 동의하기를 촉구</li> <li>○ LA올림픽대회 뿐만 아니라 '86 아시아경기대회, '88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國際體育競技大會에 참가할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갈것을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演說을 통해 첫회담이 중단된 것은 남측의 體育外的인 문제발언 때문이며 또다시 그러한 태도가 없기를 촉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唯一팀구성 一般案〉</p> <p>① 選手選拔 原則 및 方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선발경기를 통해 가장 우수한 선수선발</li> <li>○ 選拔戰은 해당종목 규약·규칙에 따라 진행</li> <li>○ 選拔戰의 장소는 북과 남의 지역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비무장지대도 가능</li> <li>○ 어떤 경우에도 종목별 북과 남의 선수 및 지도원 망라</li> </ul> <p>② 選手訓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의 시설을 번갈아 이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li> </ul>

우 리 측	북 측
	<p>제3의 장소에서 실시 - 제3의 장소 : 비무장지대 또는 다른 나라</p> <p>③ 財政 및 條件保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제공 측에서 부담 (제3의 장소에서는 공동부담)</li> </ul> <p>④ 選手團 名稱 : 조선어로 『고려』, 영어로는 『KORYO』</p> <p>⑤ 團旗 : 흰색 바탕위에 황토색 조선 지도를 그리고 그 밑에 KORYO 표기</p> <p>⑥ 團歌 : 아리랑</p> <p>⑦ 共同 常設機構 設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 『유일팀 공동사무국』</li> <li>○ 기능 : 유일팀 구성과 준비 등 실무문제 처리</li> </ul> <p>⑧ 設置場所 : 판문점</p>

우 리 측	북 측
	<p data-bbox="775 286 1163 321">〈LA 올림픽唯一팀 구성안〉</p> <p data-bbox="705 393 1191 429">① 參加種目 : 북과 남이 협의 결정</p> <p data-bbox="705 501 869 537">② 選手選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47 609 1047 644">○ 5월 20일까지 완료</li> <li data-bbox="747 717 1233 903">○ 선발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선경기를 통해 참가자격을 받은 경우 그 팀이 모체가 되며 상대측 선수를 유입</li> <li data-bbox="747 976 1233 1119">○ 기타 종목은 최근 국제·국내 경기성과 기록에 의해 쌍방이 추천 선발</li> </ul> <p data-bbox="705 1191 1212 1226">③ 選手訓練 : 6월 1일부터 출발전까지</p> <p data-bbox="705 1299 1233 1432">④ 기타문제 : 일반적인 『유일팀구성 방안』과 종목별 대표들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p>

《 第 3 次 南 北 體 育 會 談 : 1984. 5.25, 관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p>○ 基調演說을 통해 버마사건 등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다시금 촉구하면서, LA올림픽대회등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남북체육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p> <p>〈南北體育交流 방안〉</p> <p>① 남북한간에 교환경기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 체육회가 협의종목 선정</li> <li>· 쌍방 기존시설 이용, 번갈아 개최</li> <li>· 필요시 비무장지대에 공동경기장 건설</li> </ul> <p>② 남북한이 개최하는 국내 체육행사 참가보장</p> <p>③ 쌍방체육인 왕래</p> <p>④ 체육에 관한 기술·자료 교환</p> <p>⑤ 체육행사 취재 위한 기자 상호방문</p> <p>⑥ 쌍방선수들의 전지훈련 위해 편의제공</p> <p>⑦ 공동체육강습회 개최 및 공동부담으로 비무장지대 공동체육시설건립</p>	<p>○ 基調演說을 통해 버마사건 등은北韓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남측의 날조 모략극이라면서 體育會談의 파탄책임을 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회담의 난관조성에 의한 유일팀 구성지연과 LA 유일팀 출전 방해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요구</li> <li>- 體育會談의 정치적 목적 不利用 및 정치도발증지에 대한 담보 요구</li> </ul>

\* 북한측은 議題討議를 거부하고, 第 4 次 會談日字를 결정하지는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편지를 통해 연락하자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 (1984. 6. 2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LA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



### 3. '88 서울올림픽 관련 IOC 仲裁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 '88 서울 올림픽 관련 > —

IOC 仲裁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第 1 次 會談 (1985.10. 8~ 9 스위스 로잔느)
  
- 第 2 次 會談 (1986. 1. 8~ 9 스위스 로잔느)
  
- 第 3 次 會談 (1986. 6.10~11 스위스 로잔느)
  
- 第 4 次 會談 (1987. 7.14~15 스위스 로잔느)

## 《 成立 經緯 》

- 1985. 2. 1      사마란치 IOC 위원장, IOC 仲裁하에 88올림픽관련 南北 體育會談 개최 제의
  
- 1985. 3.31      우리측, 사마란치 IOC위원장 제의에 동의
  
- 1985. 7. 6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電文을 통해 IOC 중재 『로잔느 體育會談』에 동의
  
- 1985. 7.24      IOC, 南北韓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동의로 『로잔느 體育會談』이 개최되게 되었음을 발표
  
- 1985. 7.31      IOC, 『로잔느 體育會談』 일자가 1985.10. 8~9로 결정되었음을 大韓體育會에 통보

《 第 1 次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1985.10.8~9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發言을 통해 제24차 올림픽은 IOC 총회 및 헌장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北韓을 포함 모든 나라에 문호가 개방되었음을 천명</li> <li>○ 北韓의 서울올림픽대회 參加問題 관련 IOC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핸드볼, 배구, 축구 종목의 예선 : 지역배정 용의</li> <li>- 사이클 도로경기 北韓地域통과 : 검토 용의</li> <li>- 각기 자기측 깃발아래 개·폐회식 동시입장 : 긍정 검토</li> <li>- 북측의 문화행사 참여 : 환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發言을 통해 '88 대회를 훌륭하게 치르기 위한 합리적 방도는 南北이 共同主催하고 유일팀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li> <li>○ 북측은 IOC와의 개별회의에서 공동주최, 唯一팀 構成, 경기종목 절반할애 등을 계속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名稱 : 『조선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조선 평양·서울올림픽 경기대회』</li> <li>- 競技種目 : 서울·평양에 반씩 배분</li> <li>- 開·閉會式 :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진행</li> <li>- TV 방영권계약 및 이익금배분</li> <li>- 『공동조직위원회』조직</li> <li>- 唯一팀 구성출전</li> </ul> </li> </ul>

《 第2次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1986. 1.8~9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올림픽의 開催權은 不動의 사실로써 모든 회원국의 참가가 보장되나, 공동주최는 올림픽헌장및 IOC결정에 위배됨을 재강조</li> <li>○ 北側이 올림픽헌장과 IOC 결정사항에 승복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에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li> <li>- 일부종목(핸드볼, 탁구, 축구) 예선경기 북한지역 배정</li> <li>- 南北連結 사이클 도로경기실시</li> <li>- 북한의 문화행사 참가문제 등을 협의</li> </ul> </li> <li>○ 唯一팀 구성문제는 會談議題외의 문제로서 남북간 직접 회담으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8 대회에 唯一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와 공동주최는 밀접히 관련된 사안이며, 개막식에 남북이 공동 입장하는 것은 통일염원에 어긋난다며 거부</li> <li>○ 올림픽 競技種目 총 23개 중에서 11개 종목의 경기를 북한에 할애할 것을 요구</li> </ul>

《 第3次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1986. 6.10~11 》

〈 쌍방 제의내용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競技種目 配 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종목</li> <li>- 탁구, 펜싱(결승전 포함)</li> <li>* 축구예선 1개조는 유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종목</li> <li>- 축구, 탁구, 양궁, 유도, 레슬링, 체조</li> </ul>
大會名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회 올림픽대회</li> <li>- 평양개최 종목에 한하여 『제24회 올림픽 평양경기 대회』</li> </ul>
競技組織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경기조직권은 서울올림픽조직위 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올림픽조직위와 대등한 별도기구 조직</li> </ul>
開會式入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韓 각기 별개팀으로 나란히 공동입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韓 각기 별개팀으로 다른 회원국과 동일하게 순서에 따라 입장</li> </ul>

○ 南北韓 쌍방주장에 대하여 IOC측은 仲裁案을 제시하고 수락여부를 1986. 6.30한 통보 요구

- 탁구·양궁(결승전 포함)등 2개 종목 북한 배정
- 사이클 도로경기의 남북연결 실시와 축구예선 1개조 북한지역 개최
- 올림픽 관련 문화행사는 남북한 지역에서 실시

《 第4次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1987. 7.14~15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側이 공동주최주장을 철회하고 올림픽현장 준수, 서울 개·폐회식참가, 自由往來를 보장할 경우 IOC측 수정안 긍정검토 표명</li> <li>○ 북측의 남북한간 직접회담요구는 로잔느 體育會談의 결렬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會名稱은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평양』으로하고 별도의 조직위를 구성하며, 개·폐회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균등 실시</li> <li>○ 인구비례에 의해 蹴球를 포함 8개 종목 배정과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이외 별도로 남·북간 직접회담 개최를 요구</li> </ul>

〈IOC측 修正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배정 競技種目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구·양궁, 배구(여) 全競技</li> <li>- 축구예선 1개조</li> <li>- 사이클 남자개인도로 경기</li> </ul> </li> </ul>
--

\* 북한측은 IOC측의 수정안 제의와 우리측의 거듭되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을 파탄시키기 위한 무모한 「남북공동주최」를 고집하다가 1987.10.23 담화를 발표하고 회담의 종단을 선언



4. '90 北京 아시안게임 單一팀  
構成을 위한 南北體育會談



## 北京아시안게임 단일팀 構成을 위한 南北體育會談

- 第1次 會談 (1989. 3. 9 판문점 「평화의 집」)
- 第2次 會談 (1989. 3.28 판문점 「통일각」)
- 第3次 會談 (1989.10.20 판문점 「평화의 집」)
- 第4次 會談 (1989.11.16 판문점 「통일각」)
- 第5次 會談 (1989.11.24 판문점 「평화의 집」)
  - △ 第1次 실무대표접촉 (1989.12. 1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第2次 실무대표접촉 (1989.12. 6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第3次 실무대표접촉 (1989.12.15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第6次 會談 (1989.12.22 판문점 「통일각」)
  - △ 第4次 실무대표접촉 (1990. 1.1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第5次 실무대표접촉 (1990. 1.15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第7次 會談 (1990. 1.18 판문점 「평화의 집」)
  - △ 第6次 실무대표접촉 (1990. 1.22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第8次 會談 (1990. 1.29 판문점 「통일각」)
- 第9次 會談 (1990. 2. 7 판문점 「평화의 집」)

《 成 立 經 緯 》

- 1988.12.21      北韓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對南書翰
  -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제의
    - 일시 및 장소 : 1989. 2월 하순경, 판문점
    - 대표단 구성 : 쌍방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
  
- 1988.12.30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對北書翰
  - 南北 올림픽위원회간의 회담개최 수락
    - 일시 및 장소 : 1989. 3. 9 판문점 「평화의 집」
    - 의 제 :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남북체육교류 실현문제

《 第1次 회담 : 1989. 3. 9 판문점 「평화의 집」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간의 和解와 協力이 民族共同體의 형성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임을 상기할 때 단일팀구성은 이러한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는 지름길임.</li> <li>○ 理想과 目標의 실현은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과 양보의 정신이 앞서야 함.</li> <li>○ 이와함께 體育分野에서의 접촉과 교류의 경험을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두터이 해나가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體育人들은 민족자주정신과 구국통일의 의지를 가다듬고 北南 唯一팀을 구성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li> <li>○ 쌍방은 모처럼 마련된 體育會談을 만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올바른 회담자세와 원칙에 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로, 祖國統一 3대원칙에 따라 민족적 和解와 團合, 統一에 기여하려는 자세와 원칙견지</li> <li>- 둘째로, 민족적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에 부합되게 모든 것을 복종</li> <li>- 셋째로, 우리民族의 슬기와 재능, 지혜를 최상의 수준에서 선양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li> <li>- 넷째로, 인위적인 난관이나 복잡성 조성 지양 등</li> </ul> </li> </ul>

〈 雙方 提議比較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名 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말 : 南北단일팀</li> <li>영 문 : KORE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말 : 고려</li> <li>영 문 : KORYO</li> </ul>
團 旗	<p>흰색바탕에 녹색 한반도지도 와 그 아래에 KOREA 표기</p>	<p>흰색 바탕에 황토색 한반도 지도와 그 아래에 청색 또 는 적색으로 KORYO 표기</p>
團 歌	아 리 랑	아 리 랑
選 手 團 構 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團長·副團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선수數가 많은 측</li> <li>- 부단장 : 선수數가 적은 측</li> </ul> </li> <li>○ 임원·선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CA 헌장 및 해당 국 제 경기연맹 규칙 준용</li> </ul> </li> <li>○ 경기임원·본부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임원 : 종목별로 선 수數가 많은 측이 감독, 적은 측이 코치</li> <li>- 본부임원 : 쌍방 선수비 율에 따라 구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團長·副團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공동으로 2명</li> <li>- 부단장 : 공동으로 2명</li> </ul> </li> <li>○ 지도원 : 아시아경기대회 기술규정 준용</li> <li>○ 보장성원(의사, 안마사, 요리사 등)은 별도 협의</li> <li>○ 총지휘부와 종목별 지휘 부를 구성</li> <li>○ 공동훈련 단계의 선수, 지도원, 보장성원은 1989. 8까지 선발</li> </ul>

구 분	우 리 측	북 측
選 手 團 構 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회에 참가할 선수, 지도원, 보장성원의 최종선발 관련 팀종목은 1990. 5까지, 개인경기종목은 1990. 7까지 선발</li> </ul>
選 手 團 團 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복디자인 : 쌍방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결정</li> <li>○ 단복표지 : 쌍방이 합의한 단기 및 선수단 명칭에 따라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同事務局에서 결정</li> </ul>
選 手 選 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則 : 남북의 구별없이 종목별로 가장 우수한 선수 선발</li> <li>○ 전종목 선수선발</li> <li>○ 선수선발 위해 교환경기 실시</li> <li>○ 선발전은 각 종목별로 서울·평양 등 쌍방이 동의하는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 선발</li> <li>- 북과 남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기여</li> <li>- 종목별로 북과 남의 선수 및 지도원 포함</li> </ul> </li> <li>○ 먼저 공동훈련 실시후 참가 선수선발</li> <li>○ 기록종목은 공동훈련기간중의 기록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경기 기록위주</li> </ul>

구 분	우 리 측	북 측
選手選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종목의 선수가 없거나 적합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 선발</li> <li>○ 選拔方法, 선발전 시기, 경기용 기구, 경기 규칙, 심판선정 등은 쌍방간 협의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점제 종목은 共同訓練期間 외국선수들이 함께 참가하는 공개초청경기에서 선발</li> <li>○ 승부종목은 共同訓練期間 실력과 국내외경기전적을 고려하여 북남 대표들간 협의, 북남의 균형 보장 방향에서 선발</li> <li>○ 한측에서만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측에서 선발</li> <li>○ 한개 종목에 2명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북과 남 각각 1명씩 선발</li> </ul>
選手訓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가 선발된 종목부터 빠른시기에 실시, 남북의 기존시설 이용하여 상호왕래하며 실시, 필요시 제3의 장소·시설 이용</li> <li>○ 세부사항은 쌍방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단위로 相互往來</li> <li>○ 북남 선수·지도원 배합 원칙</li> <li>○ 1989. 9부터 실시</li> <li>○ 협의에 따라 해외훈련 및 외국팀 초청</li> </ul>



구 분	우 리 측	북 측
身 邊 安 全 保 障	신변안전보장각서 교환	신변안전보장각서 교환
選 手 團 經 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전비용 : 선수 및 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공동부담</li> <li>○ 선발전 · 훈련경비 : 초청측에서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出戰經費 : 공동부담</li> <li>○ 공동훈련 비용 : 훈련장소 제공측에서 부담, 해외훈련시는 출발시키는 측에서 부담, 외국팀 초청시는 경기장 제공측에서 부담</li> </ul>
推 進 機 構 構 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단일팀 공동위원회』 설치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후 1개월내 구성</li> <li>- 대표는 각 10명 내외</li> </ul> </li> <li>○ 서울 · 평양에 공동사무국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同事務局』 설치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장 2명(남북 각각 1명)</li> <li>- 판문점 중감위 휴게실 (합의시 변경 가능)</li> </ul> </li> </ul>

< 의견일치 >

- 團 歌 : 아리랑

《 第2次 회담 : 1989. 3.28 판문점 「통일각」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民族團合과 스포츠정신에 입각하여 相互尊重과 양보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차이점들은 능히 극복해 나갈수 있음.</li> <li>○ 오늘 會談에서는 선수선발, 훈련 및 선수단 구성문제와 남북 단일팀 공동기구 설치문제등에 대한 토의를 희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그동안 쌍방이 제기한 유일팀 構成方案들을 심중히 연구한 데 기초하여 회담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내놓음.</li> <li>- 첫째로, 쌍방의 方案을 조절하여 일치시킴으로써 유일팀 構成方案을 순탄하게 토의</li> <li>- 둘째로, 쌍방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정안 제기</li> <li>- 셋째로, 1차 會談에서 제기만하고 토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li> </ul>

〈 雙方 主張比較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名 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말 : 남북단일팀</li> <li>영 문 : KOREA</li> <li>* 1차회담시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말 : 고려</li> <li>영 문 : KOREA</li> </ul>
團 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흰색바탕에 황토색 한반도 지도로 하되 주변은 녹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흰색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li> </ul>
選 手 選 拔 方 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合同訓練 → 선수선발전 → 강화훈련</li> <li>* 1차회담시 북측이 제시한 『공동훈련』을 『합동훈련』으로 수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훈련 → 선수선발전</li> <li>○ 기록종목, 채점종목, 맞붙어 승부를 가리는 종목 등으로 구분</li> <li>* 1차회담시와 동일</li> </ul>
合 同 訓 鍊 時 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 9</li> <li>* 1차회담시와 동일</li> </ul>
選 手 團 構 成 時 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 6.22 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종목 : 1990. 5까지</li> <li>○ 개인종목 : 1990. 7까지</li> <li>* 1차회담시와 동일</li> </ul>

〈 合意 事項 〉

- 團旗(깃발)에 명칭(로마자)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
- 合同訓練을 통해 선수 선발
- 합동훈련에 참가할 선수 數는 남북 각기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 第3次 會談 : 1989. 10.20, 판문점 「평화의 집」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팀 呼稱問題에서 우리말 표기를 「한나라」로 할것을 수정 제의하고, 團旗問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지도의 색깔을 北側이 제의한 하늘색에 동의</li> <li>○ 選手選拔 방법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남북간의 선발전을 통해서 선수를 선발할 것을 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唯一팀 호칭문제에서 우리말 표기를 「코리아」로 하자고 수정 제의</li> <li>○ 選手 選拔은 남과 북의 선수 구분 없이 뒤섞어서 합동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南北이 균등하게 선수를 선발하자고 주장</li> </ul>

〈 合意 事項 〉

- 名稱 : 영문표기는 『KOREA』
- 團旗 : 흰색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

《 第 4 次 會 談 : 1989. 11.16, 판문점 「통일각」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選手 選拔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南北間 選拔전을 개최하여 選拔하고</li> <li>— 選手選拔 方法은 본회담에서 기본 골격을 토의, 결정한 후 「共同委員會」에서 구체적 세부사항을 협의할것을 제의</li> <li>○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의 「共同事務局」은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할 것을 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選手 選拔은 남북선수 구분없이 뒤섞어서도 하고 갈라서도 하며 共同訓練 過程에서 균등하게 選拔하자면서</li> <li>— 선수선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동위원회에 넘기자고 주장</li> <li>○ 共同機構 設置問題 관련 공동위원회 산하의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설치하자고 주장</li> </ul>

〈 合 意 事 項 〉

- 名稱 : 우리말 『코리아』, 영문 『KOREA』 (약자 : KOR), 중국어 표기에서 『高麗』는 제외

《 第5次 會談 : 1989. 11.24, 관문점 「평화의 집」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選手 選拔戰은 합동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南北 選手間에 공개적으로 실시</li> <li>○ 選拔戰을 공개리에 실시하는 것이 南北體育交流의 차원에서나 민족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li> <li>○ 選拔戰은 각 종목별로 서울과 평양등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選手 選拔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남북간에 대결을 조장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li> <li>○ 選手 選拔戰의 장소나 횟수 문제 등은 공동위원회에 넘겨 협의결정</li> </ul>

《 第 1 次 實務代表接觸：1989. 12. 1,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5 차 體育會談까지의 쌍방 주장 대비표를 제시하고 10個項의 토의 내용 확인 및 이견조정을 가질 것을 제의</li> <li>○ 선수 선발이 단일팀 구성·출전의 본질문제이므로 體育會談에서 타결되어야 함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選手選拔에 대해서는 異見조정을 위해 공동위원회에 넘기자고 주장</li> </ul>

〈 雙方 主張 比較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選拔戰 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選拔戰은 합동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선수간에 공개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同委員會』에서 협의 결정</li> <li>* 남북선수간의 공개적 선발전은 반대</li> </ul>
採點種目 選拔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종목별 출전선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기 1명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에 참가할 선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기 1명씩은 포함</li> </ul>



구 분	우 리 측	북 측
團 長, 副 團 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團 長 : 선수數가 많은 측</li> <li>○ 副團長 : 선수數가 적은 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同團長制</li> </ul>
本 部 任 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선수비율에 따라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균형보장</li> </ul>
共 同 事 務 局 設 置 場 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li> </ul>
共 同 事 務 局 人 員 派 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수의 인원을 공동사무 국에 파견 · 상주</li> </ul>	

《 第 2 次 實 務 代 表 接 觸 : 1989. 12. 6,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選手團 團長은 선발된 선수의 수 가 많은 측에서 말고, 부단장은 적은측에서 말하는것이 단일팀 選手 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을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選手團 團長은 공정성의 견지에서 볼때 어느 한쪽에서만 나온다면 공정하다 할 수 없으므로 共同團 長制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li> </ul>

《 第 3 次 實務代表接觸 : 1989. 12.15,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單一팀 構成, 참가와 관련한 합동 훈련, 선발전, 強化訓練등 남북왕래사업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共同事務局」을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 것을 주장</li> <li>○ 選手團 構成과 관련하여 선수가 많은 측이 단장, 적은측이 부단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同事務局」은 하나로 구성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일정기간씩 번갈아 가며 사업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의</li> <li>○ 선수단 단장은 共同團長制</li> </ul>

〈 合意 事項 〉

- 선발전 공개실시
- 선수단 경비, 선수단 및 관계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문제

《 第 6 次 會 談 : 1989. 12. 22, 관문점 「통일각」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單一팀構成, 참가문제와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共同委員會 및 공동사무국의 구성, 운영방안을 제시</li> <li>○ 合意事項의 성실한 이행의 보장문제에 대한 토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側은 우리측 방안에 대한 검토와 토의도 없이 동의하면서 合意事實을 발표할데 대한 우리측의 동의를 요구</li> </ul>

〈 雙 方 主 張 比 較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單一팀 중국어호칭	○ 『可禮亞』	○ 『高利亞』 또는 『考里亞』
選手團 團長	○ 선수數가 많은 측이 단장, 선수數가 적은측이 부단장	○ 共同團長制
共同事務局 設置場所	○ 서울·평양에 설치	○ 평양·서울에 설치

구 분	우 리 측	부 측
合意事項의 성실이행 보장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合意事項의 용어정의, 단일팀구성·참가와 관련한 일정의 준수, 體育外的 문제와의 불연계, 합의사항 불이행시의 조치문제 등에 합의하고 이를 쌍방 당국이 보증</li> </ul>	

< 合意 事項 >

- 單一팀 중국어 호칭 : 『可禮亞』
- 選手團 團長 : 선수가 많은 측에서 단장, 선수가 적은 측에서 부단장
- 共同事務局 설치장소 : 서울·평양에 설치
-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구성·운영 : 북측이 우리측 안에 동의
- 합의사항의 성실이행 보장문제 : 북측이 우리측 안에 원칙적 동의

《 第4次 實務代表接觸：1990. 1.1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우 리 측	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 『합의 사항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와 함께 『친선교환경기 개최·시설 답사반 교환』 등 신뢰보장장치 강구문제를 기본합의서 부칙과, 4개 부속합의서 등에 포함시켜 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合意事項 履行保障方案』을 제시 하지 않은채 기본합의서 10개항 및 공동추진기구 운영세칙에 대한 문안토의에 들어가 조속히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주장</li> </ul>

《 第5次 實務代表接觸：1990. 1.15,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우 리 측	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單一팀 構成·參加를 실현시키기 위해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부칙 및 4개 부속합의서)에 대한 토의가 중요함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칙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제11차 베이징아세아 경기대회 北南唯一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합의 이행을 위한 담보각서』 및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서안』을 제시</li> </ul>

《 第7次 會談 : 1990. 1.18, 판문점 「평화의 집」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本合意書 부칙 10개항중 제3항 『친선교환경기 개최 및 시설 답사 반 교환』, 제4항 『체육외적문제와의 불연계』, 제6항 『남북한 왕래 시 자기측 수송수단 이용』등 3개항을 철회</li> <li>○ 附屬合意書중 『친선교환경기 개최 및 시설답사반 상호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本合意書 부칙 10개항의 전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li> </ul>

《 第6次 實務代表接觸 : 1990. 1.22,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合意書 부칙중 용어해석문제, 추진일정 준수문제, 單一팀構成 불가시 개별팀 참가 보장문제 등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合意書 이행보장장치가 포함된 附則條項은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li> </ul>

《 第 8 次 會 談 : 1990. 1.29, 觀 門 點 「 統 一 각 」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合意書 부칙조항 가운데 공개선발전의 개념 등 용어정의, 추진 일정 준수, 合意事項 불이행시의 조치(단일팀구성 불가시 개별팀 참가보장)등 합의사항의 『이행보장문제』 토의를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側の 합의사항 이행 보장장치를 『制動裝置』라고 하면서 이행보장문제 토의거부 및 부칙조항의 철회를 요구</li> </ul>

《 第 9 次 會 談 : 1990. 2. 7, 觀 門 點 「 平 化 的 集 」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側이 제시한 3개 전제 조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79 평양 世界卓球大會, '84 LA 올림픽 경기대회에 우리측의 개별팀 참가를 저지하려던 再版이라면서 북측의 입장변화를 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발언을 통해 3개항의 前提條件을 제시하면서 체육회담의 결렬을 유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절대로 별개팀으로 가지않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일팀으로 출전한다는데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li> <li>② 회담지연 책임을 시인하고 부칙조항을 철회</li> <li>③ 별개팀으로 가겠다고 한 체육책임자의 발언 취소</li> </ol> </li> </ul>

\* 북측은 남측이 3個項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더이상의 회담은 불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會談決裂 선언





5. 주요 國際競技大會 단일팀 구성 ·  
참가를 위한 南北體育會談



— < 주요 국제경기대회 > —

單一팀 構成 · 參加를 위한 南北體育會談

- 第 1 次 會談(1990.11.29 판문점 「통일각」)
- 第 2 次 會談(1991. 1.15 판문점 「평화의 집」)
- 第 3 次 會談(1991. 1.30 판문점 「통일각」)
- 第 4 次 會談(1991. 2.12 판문점 「평화의 집」)

《 成立 經緯 》

- 1990.10.25 鄭東星 체육부장관, 북한국가체육위원장 김유순과 회담을 갖고 남북체육회담 개최합의(서울, 통일축구대회 기간중)

〈 共同合意文 내용 〉

- ① 제1차 남북체육회담은 1990.11.29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
  - ② 會談代表團의 구성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대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단 명단은 추후 발표
  - ③ 會談議題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 제3회 삼지연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기타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쌍방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로 설정
  - ④ 南北統一蹴球大會의 정례화 문제와 기타 남북체육교류 문제는 위의 남북체육회담에서 협의 결정
- 1990.11.27 金鍾烈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회담참가 우리측 대표단 명단 대북통보
  - 1990.11.27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회담참가 북측대표단 명단 대남통보

《 第1次 會談 : 1990.11.29 판문점 「통일각」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발언을 통해 회담 의제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南北統一蹴球大會의 정례회를 비롯한 남북체육교류 실현문제</li> <li>ii) 國際競技大會 단일팀 구성·참가 문제로 할 것을 제의</li> </ul> </li> <li>○ 議題 i)항의 실현방안으로 종목별 친선경기의 교환개최, 쌍방주최 주요경기대회에 상호참가, 전지훈련 교환실시, 체육학술회의 공동개최, 체육기술 및 정보의 교환, 체육기자 상호방문 등을 제시</li> <li>○ 議題 ii)항과 관련하여 『南北統一蹴球大會의 정례 개최에 관한 합의서』(안)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안)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發言을 통해 유일팀 구성문제 토의에 관한 원칙 3개항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결을 피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촉진에 기여</li> <li>-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경기에 유일팀으로 참가</li> <li>- 유일팀 출전 중도 불포기 및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li> </ul> </li> <li>○ 주요 國際大會에의 단일팀 구성 참가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합의서 초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li> <li>- 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북남유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li> <li>- 제25차 올림픽경기대회 아세아 지역 축구예선경기에 북남유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li> <li>- 제6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북남유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li> </ul> </li> </ul>

《 第2次 會談 : 1991. 1.15 판문점 「평화의 집」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발언을 통해 討議順序와  관련  절충안  제시</li> <li>- 첫째,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문제</li> <li>- 둘째, 南北統一蹴球大會  정례화  문제</li> <li>- 셋째,  전반적인  남북  체육교류  협력과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문제</li>   <li>○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과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發言을  통해  회담  의제를  南北統一蹴球大會  서울대회시 『공동  합의문』(90.10.25)대로  할  것을  제의</li> <li>-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  25차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대  회,  제3차  삼지연  겨울철  아시  아경기대회  및  기타  주요국제경  기대회에  쌍방이  유일팀을  구성  하여  참가하는  문제</li>   <li>○ 統一蹴球  定例化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의  유일팀  구  성·참가문제  협의  해결후  논의할  것을  주장</li>   <li>○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  남유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  서  절충안  제시</li> </ul>

《 第3次 會談 : 1991. 1.30 판문점 「통일각」 》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발언을 통해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와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관련 절충안을 제시하고 일괄타결을 제의</li> <li>- 選手選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회 『世卓』 : 단일팀 공동추진 기구에서 협의선발</li> <li>· 제6회 『靑少年蹴球』 : 서울·평양 공개평가전후 단일팀 공동추진 기구에서 협의선발</li> </ul> </li> <li>- 選手訓練 問題 : 2개 대회 모두 서울과 평양에서 1회씩 강화훈련 실시</li> <li>- 選手團 團長問題 : 2개 대회의 단장을 남북이 각각 하나씩 분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調發言을 통해 남측 올림픽위원회가 화해와 단합의 차원에서 T/S 훈련중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li> <li>- 선수선발 방식 : 선발전보다 협의의 방법이 합리적</li> <li>- 선수훈련 문제 : 전지훈련을 주장하면서 남북왕래훈련 반대</li> <li>- 선수단 단장문제 : 공동단장제</li> </ul>

《 第 4 次 會 談 : 1991. 2.12 판문점 「평화의 집」 》

- 南北 쌍방은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4.24~5.6 일본 지바현)와 제6회 世界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6.14~30 포르투갈)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쟁점사항들을 일괄타결 짓고 합의서들을 채택

〈 合 意 內 容 〉

區 分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제6회 世界青少年蹴球大會
選手選拔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공개 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왕래 4월말~5월초 실시)
選手訓練	일본 전지훈련	남북 왕래훈련
選 手 團 團 長	북측이 담당 (단일단장제)	남측이 담당 (단일단장제)



## 제 41 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南北單一팀

### 構成 · 參加에 관한 合意書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민족화합과 체육정신에 입각하여 제 41 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南北 이 單一팀을 구성 · 참가함으로써 南北體育人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보여주고 體育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合意하였다.

#### 1. 選手團 呼稱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약자 : KOR)로 한다.

#### 2. 選手團 團旗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한다.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 3. 選手團 團歌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 4. 選手選拔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하여 선발한다.

## 5. 選手團 構成

가. 1991년 3월 초순까지 완료한다.

나. 국제탁구연맹 규칙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다. 團長은 북측에서 맡는다.

라. 기타 임원구성도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한다.

## 6. 選手訓練

가. 대회현지에서 실시한다.

나. 훈련에 참가할 單一팀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한다.

다. 訓練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참가시까지 실시한다.

## 7. 選手團 經費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한다.

## 8.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가. 단일팀구성 및 참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卓球單一팀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나. 「實務委員會」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基本合意書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 「實務委員會」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씩으로 구성하며 남과 북이 각각 1명씩의 共同委員長을 둔다.

라. 「實務委員會」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관문점에서 개최한다.

마. 「實務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 (4)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바.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9. 本 合意書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관 문 점

## 제 41 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단일팀실무위원회

### 構成 · 運營에 관한 合意書

쌍방은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 8 항 「單一팀공동추진기구」규정에 의거, 「탁구단일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機能

가.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

(가)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나) 훈련참가 인원수(선수·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

(다) 선수훈련 때의 수송·숙식·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요원등 지원인원에 관한 사항

##### (2)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

(가) 선수단장 및 임원(감독·코치)선정에 관한 사항

(나) 행정요원(총무·섭외·공보 등), 의료요원등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라)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수단의 문제발생시 解決方案 講究에 관한 사항

(마)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方法에 관한 사항

(바) 선수단의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3) 선수단 團服 및 참가에 필요한 裝備에 관한 사항

(4) 대회개최 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單一팀 構成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나. 實務委員會는 단일팀선수단 구성이 완료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참가와 관련한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 實務委員會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탁구협회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국제탁구연맹 등 國際體育機構 및 다른 나라 卓球協會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 2. 構 成

가. 實務委員會는 쌍방 각기 공동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나. 쌍방은 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을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다. 實務委員會 委員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 3. 運 營

- 가. 實務委員會는 탁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종료후 쌍방간에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나. 實務委員會 會議는 판문점 남측지역「평화의 집」과 북측지역「통일각」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개최한다.
  - 다.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며, 合意方式은 남북 쌍방 합의 제로 한다.
  - 라. 쌍방은 合意에 따라 관계 專門家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 마. 쌍방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 바. 회의결과의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4.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5.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판 문 점

##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南北單一팀

###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민족화합과 체육정신에 입각하여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에 南北이 單一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南北體育人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보여주고 體育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合意하였다.

#### 1. 選手團 呼稱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약자 : KOR)로 한다.

#### 2. 選手團 團旗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한다.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 3. 選手團 團歌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 4. 選手選拔

가. 評價戰을 기초로 하여 단일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한다.

나. 評價戰은 1991년 4월말부터 5월초 사이에 완료하며 公開的으로 실시한다.

다. 評價戰은 서울과 평양 등 남북의 지역에서 각 1회씩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評價戰 개최경비는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한다.

#### 5. 選手團 構成

가. 늦어도 1991년 5월초까지 완료한다.

나. 國際蹴球聯盟 규칙과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組織委員會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다. 團長은 남측에서 맡는다.

라. 기타 임원구성도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한다.

#### 6. 選手訓練

가. 南北을 왕래하며 1회씩 번갈아 실시한다.

나. 훈련에 참가할 쌍방 선수단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한다.

다.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참가시까지 실시한다.

#### 7. 選手團 經費

남북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일팀 공동 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8. 身邊安全保障

훈련과 평가전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계인원들에 대한 身邊安全保障은 남과 북의 관계당국이 「身邊安全保障覺書」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장한다.

## 9.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가. 單一팀 構成 및 參加問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協議·推進하기 위하여 「蹴球單一팀 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나. 「實務委員會」는 단일팀구성·참가에 대한 기본합의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 「實務委員會」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씩으로 구성하며, 북과 남이 각각 1명씩의 共同委員長을 둔다.

라. 「實務委員會」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마. 「實務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의 南北往來와 관련한 사항
- (4) 선수단 단복 및 대회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대회참가에 따르는 제반사항

바.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10. 本 合意書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판 문 점

##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單一팀 實務委員會

### 構成 · 參加에 관한 合意書

쌍방은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南北單一팀 構成 · 參加에 관한 합의서 제 9 항 「단일팀공동추진기구」규정에 의거, 「蹴球單一팀 實務委員會」(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機能

가. 實務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협의 · 결정한다.

##### (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

- (가) 評價戰을 기초로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나) 훈련참가 인원수(선수 · 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
- (다) 선수훈련 때의 수송 · 숙식 · 의료 · 통신 등 諸般 便宜事項
- (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 · 의료 및 기술요원 등 支援 人員에 관한 사항
- (마) 선수훈련 때의 記者團 交換에 관한 사항
- (바) 評價戰과 選手訓練 때의 선수단 및 관계자의 활동보장에 관한 사항

##### (2) 選手團 構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選手團長 및 임원(감독 · 코치)선정에 관한 사항

- (나) 行政要員(총무·섭외·공보 등), 醫療要員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단일팀으로의 대회참가 확인통보 및 선수명단 제출에 관한 사항
  - (라) 단일팀으로의 대회참가확인 통보후 선수단의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마) 選手團 結團式과 解團式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바) 선수단의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구성·참가와 관련된 선수 및 관계인원의 南北往來와 관련한 사항
- (4) 選手團 團服 및 참가에 필요한 裝備에 관한 사항
- (5) 대회개최 기간중 열리는 各種 會議參加에 관한 사항
- (6)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나. 實務委員會는 단일팀의 참가확인을 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 實務委員會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蹴球協會가 제 6 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 나라 축구협회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 2. 構 成

- 가. 實務委員會는 쌍방 각기 공동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나. 쌍방은 實務委員會 委員名單을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다. 實務委員會 委員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 3. 運 營

- 가. 實務委員會는 축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종료후 쌍방간에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한 제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나. 實務委員會의 會議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개최한다.
- 다. 회의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합의제로 한다.
- 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관계 專門家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 마. 쌍방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共同委員長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 바. 會議結果의 報道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發表한다.

4.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5. 本 合意書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판 문 점

國際올림픽委員會, 國際卓球聯盟, 國際 및 아시아  
蹴球聯盟에 보낼 편지에 관한 合意書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와 제6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에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탁구연맹, 국제 및 아시아축구연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 2월 12일 판 문 점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國際올림픽委員會 委員長 貴下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第41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와 오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第6回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에 南北單一팀을 참가시킨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곧 쌍방의 경기단체간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를 진행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쌍방의 경기단체들은 單一팀 參加에 따르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 및 아시아 연맹과 협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單一팀의 名稱은 영어로 「KOREA」(약자 : KOR)로 하고, 選手團 團旗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하며, 選手團 團歌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으로 할 것입니다.

第41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와 第6回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에 남북단일팀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991년 2월 12일

## 「오기무라 이치로」 國際卓球聯盟會長 貴下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第41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南北單一팀을 參加시킨다는 데에 合意하였으며, 쌍방 탁구 협회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우리 탁구협회들은 필요하다면 동 대회에 南과 北이 單一팀으로 참가하는 데 따르는 여러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연맹과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單一팀의 名稱은 영어로 「KOREA」(약자 : KOR)로 하고, 選手團 團旗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하며, 選手團 團歌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으로 할 것입니다.

南北卓球協會들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南北單一팀의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귀연맹의 적극적인 協調를 바랍니다.

1991년 2월 12일

## 「호아오 아벨랑헤」國際蹴球聯盟會長 貴下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第6回 世界靑少年 蹴球選手權大會에 南北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쌍방 축구협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通報하는 바입니다.

우리 축구협회들은 필요하다면 동 대회에 南과 北이 單一팀으로 참가하는 데 따른 여러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과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單一팀의 名稱은 영어로 「KOREA」(약자 : KOR)로 하고, 選手團 團旗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하며, 選手團 團歌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으로 할 것입니다.

南北蹴球協會들은 第6回 世界蹴球選手權大會에 南北單一팀의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귀연맹의 적극적인 協調를 바랍니다.

1991년 2월 12일



## 「다토 함자」 아시아蹴球聯盟會長 貴下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第6回 世界靑少年 蹴球選手權大會에 南北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쌍방 축구협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通報하는 바입니다.

우리 축구협회들은 필요하다면 동 대회에 單一팀 參加에 따르는 여러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과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單一팀의 名稱은 영어로 「KOREA」(약자 : KOR)로 하고, 選手團 團旗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하며, 選手團 團歌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으로 할 것입니다.

南北蹴球協會들은 第6回 世界蹴球選手權大會에 南北單一팀의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귀연맹의 적극적인 協調를 바랍니다.

1991년 2월 12일



6. 第41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 實務委員會 會議



〈 第41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 〉

單一팀 實務委員會 會議

- 第 1 次 實務委員會 會議(1991. 2.21, 판문점 「통일각」)
  
- 第 2 次 實務委員會 會議(1991. 2.27, 판문점 「평화의 집」)

《 第1次 卓球單一팀 實務委員會 會議：1991. 2.21 판문점 「통일각」 》

- 남북 쌍방은 각기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 構成·參加 관련 單一팀實務委員會 合意書(案)을 제시하고 유사조항 및 쟁점조항으로 분류 토의
- 南北單一팀 構成에 있어서 중요사항인 選手選拔問題, 選手團 構成問題, 선수단 단복·장비문제 및 단기·단가 등에서는 意見接近을 이루었으나 結團式·解團式 등에서 異見

〈 雙方 主張 差異點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選手團 結團式 및 解團式 場所問題	○ 서울과 평양	○ 대회 현지
選手團 出發, 歸還 관련 輸送 및 經路問題	○ 結團式을 거행한 곳을 出發地로, 解團式을 거행할 곳을 歸還地로	○ 서울·평양에서의 結·解團式 반대, 각각 出發 및 歸還

《 第2次 卓球單一팀 實務委員會 會議 : 1991. 2.27 판문점 「평화의 집」 》

- 남북 쌍방은 쟁점사항이었던 結·解團式 문제에 대해 행사는 생략 하되 대회현지에서 공동환영식과 공동응원을 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 構成·參加 관련 제반사항 합의

〈 合意 事項 〉

選手 選拔

- 大會參加 選手 : 국제탁구연맹의 배정인원과 연맹 랭킹규정에 의한 자동 출전 인원
- 選手 選拔 : 출전선수는 쌍방간 협의 결정

種 目	配 定 人 員
女子團體戰(4명)	남측 2, 북측 2명
男子團體戰(5명)	남측 2, 북측 3명
個人單式	大會參加選手 全員 出戰
個人複式, 混合複式	쌍방 각 1명으로 구성

\* 直前會(제40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서 우승한 선수는 예외

## 選手團 構成

- 選手團 規模 : 南北 쌍방 각기 28名씩 總 56名으로 구성
  - － 단장 1명(북측), 고문 4명(남북 각 2명), 총감독 1명(남측), 실무위원 6명(남북 각 3명), 감독 2명(남자는 북측, 여자는 남측), 코치 4명(남북 각 2명), 선수 남자 12명(남북 각 6명), 여자 10명(남북 각 5명), 협회이사 2명(남북 각 1명), 전문가 2명(남북 각 1명), 총무 2명(남북 각 1명), 섭외 2명(남북 각 1명), 공보 2명(남북 각 1명), 통역 2명(남북 각 1명), 의료 2명(남북 각 1명), 촬영 2명(남북 각 1명)
- 結·解團式 : 非實施(현지에서 共同歡迎式 및 共同應援)
- 選手유고시 措置 :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발된 選手가 부상·疾病 등의 사유로 大會參加 不可能시 해당협회에서 선발충원

## 참가신청서 작성 제출

- 參加申請書 作成 : 單一팀 實務委員會에서 선수명단 확정 즉시 쌍방 共同 委員長 名義로 작성
- 發送時限 : 늦어도 3월 15일 이전 發送
- 發送方式 : 남북 각기 發送



## 選手訓練

- 訓練期間：1991년 3월 26일~4월 23일  
\* 3월 25일 현지 도착
- 訓練場所：大會 現地(일본)
- 經費負擔：남북 共通事案에 소요되는 諸般經費는 공동부담
- 訓練場所 및 便宜問題：單一팀實務委員會 共同委員長 名義로 大會組織委員會에 협조요청

## 團旗, 團歌, 團服, 運動服, 運動用品

- 團旗, 團服：北側에서 준비
  - 團歌, 運動服：南側에서 준비
  - 運動用品：
    - 탁구채, 고무 등 개인지참용구는 각자 확보
    - 공, 고무फल, 수건 등 공동용구는 공동구입
- \* 단복·운동복·각종 장비에는 單一팀 國旗표지 외에 다른 표지는 할 수 없음. 단, 트레이닝복 가슴에는 단일팀 국기표지 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등에는 영어로 『KOREA』를 표기

## 기 타

- 大會期間中 會議參加 : 대표자회의, 대진표 작성회의 등 대회기간중 개최되는 회의참가는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雙方의 合意로 필요한 대표 또는 대표단 구성·참가
- 選手團 問題發生 : 선발선수 유고시 충원문제를 제외한 여타문제 발생시 單一팀 實務委員會에서 協議 해결

7. 第 6 回 世界青少年蹴球選手權大會  
單一팀 實務委員會 會議



〈 第 6 回 世界青少年蹴球選手權大會 〉

單一팀 實務委員會 會議

○ 第 1 次 實務委員會 會議(1991. 2.22, 판문점 「평화의 집」)

○ 第 2 次 實務委員會 會議(1991. 2.27, 판문점 「통일각」)

《 第1次 蹴球單一팀 實務委員會 會議 : 1991. 2.22 판문점 「평화의 집」 》

- 남북 쌍방은 각기 제6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單一팀 構成 · 參加 관련 單一팀 實務委員會 合意書(案)을 제시하고 토의 진행

〈 合意 事項 〉

評價戰 關聯事項

- 평가전은 서울과 平壤에서 각 1회 공개 실시
- 평가전은 南北同數로 구성된 혼성팀으로 실시
- 평가전 참가선수단은 남북 각기 선수 18명, 임원 7명(계 25명)
- 평가전시 南北往來人員 規模는 선수단 25명, 實務委員會 위원 5명, 지원 인원 15명 및 기자단(\*기자단 규모는 추후 협의)

強化訓練 關聯事項

- 強化訓練은 5월 10일부터 시작(\* 구체적 일정은 전지훈련 여부 결정후 토의)
- 강화훈련 때의 수송, 숙식, 의료, 통신 등 諸般 便宜事項은 초청측이 제공

大會參加 選手團 構成問題

- 選手 : 南北이 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하되 5월 8일까지 선발 完了
- 任員 등 여타 참가인원은 追後 協議

〈 雙方 爭点事項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評價戰 時期 問題	○ 1991. 4.28 평양, 1991. 5. 5 서울 개최	○ 1991. 5. 2 서울, 1991. 5. 7 평양 개최
評價戰時 記者 團 規模問題	○ 70명 (TV중계요원 20명 포함)	○ 20명
強化訓練時 支援人員	○ 남북 각기 15명	○ 남북 합친 총수 15명

《 第2次 蹴球單一팀 實務委員會 會議 : 1991. 2.27 판문점 「통일각」 》

- 남북 쌍방은 쟁점사항이었던 평가전, 강화훈련 등에 합의함으로써 제6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單一팀 構成・參加 관련 제반사항 타결

〈 合意 事項 〉

評價戰

- 日時 및 場所 : 1991. 5. 4, 서울  
1991. 5. 8, 평양
- 方 式 : 남북 각기 18명씩의 선수가 參加하여, 남북 선수 9명씩으로 구성된 2개의 혼성팀간 실시
- 審 判 : 주최측의 국제심판
- TV 實況中繼 : 主催側이 相對側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화면・음성 제공
- 往來人員 規模 : 선수 18, 임원 7, 실무위원회위원 5, 지원인원 15, 취재 기자단 25(계 70명)



- \* 評價戰 실시전 각각 2일간(서울 : 5월 2, 3일, 평양 : 5월 6, 7일) 合同訓練 실시

### 選手選拔

- 南北 각기 9명씩 1991. 5. 8까지 선발완료

### 強化 訓練

- 日 程 : 평양(5.10~15), 서울(5.16~20), 프랑스 틀롱 전지훈련(5.22~26), 틀롱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참가(5.27~6. 4), 포르투갈 현지 적응훈련(6. 6~13) 실시
- 參加人員 : 남북 각기 36명씩 총 72명
  - 선수 18(남북 각 9), 단장 1(남), 부단장 1(북), 감독 1(북), 코치 1(남), 총무 2(남북 각 1), 섭외 2(남북 각 1), 공보 2(남북 각 1), 의료 2(남북 각 1), 협회이사 8(남북 각 4), 전문가 6(남북 각 3), 통신 4(남북 각 2), 연락 4(남북 각 2), 수행 8(남북 각 4), 촬영 2(남북 각 1), 기자 10명(남북 각 5)
- 便宜提供 : 서울·평양 강화훈련시는 場所를 提供하는 側에서 보장, 프랑스 전지훈련 및 포르투갈 현지 적응훈련시는 雙方 蹴球協會間 別도 協議決定

## 選手團 構成 및 登錄

- 選手團 規模 : 남북 각 31명씩 총 62명의 인원으로 구성
  - 選手 18명(남북 각 9)
  - 任員 30명(남북 각 15)
    - 단장 1(남), 부단장 1(북), 감독 1(북), 코치 1(남), 총무 2(남북 각 1), 공보 2(남북 각 1), 섭외 2(남북 각 1), 의료 2(남북 각 1), 통역 2(남북 각 1), 촬영 2(남북 각 1), 협회이사 8(남북 각 4), 전문가 6명(남북 각 3)
  - 支援人員 14명(남북 각 7)
- \* 選手團 管理는 단장 책임, 단장 부재시는 부단장이 대리
- \* 單一팀 構成後 선발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협회에서 선발보충
- 大會 公式登錄人員 : 선수 18, 임원 7(남측 4명 : 단장 1, 코치 1, 총무 1, 의료 1, 북측 3명 : 부단장 1, 총무 1, 감독 1)

## 參加節次 履行

- 單一팀參加 通報 : 1991. 2.28까지 雙方 蹴球協會會長 共同名義로 FIFA 와 AFC에 각각 통보

- 參加申請書 提出 : 남북 쌍방 축구협회 共同名義로 작성, 1991. 2.28까지  
FIFA와 AFC에 각기 발송
- \* 신청서 제출시 單一팀 名稱, 團旗, 團歌, 유니폼 상·하 및 스타킹 색깔  
도 아울러 통보
- 選手名單 提出 : 1991. 6. 4 이전에 남북 쌍방 축구협회 共同名義로 제출

#### 結·解團式 및 輸送經路

- 結團式 : 남북왕래 강화훈련 종료직후 서울에서 실시
- 解團式 : 선수단 귀환후 평양에서 실시
- 結·解團式 方法 : 주최측에서 정하되 세부사항은 쌍방간 협의결정
- 輸送經路 : 선수단은 空路로 서울출발, 空路로 평양귀환(해단식후 남측 선수는 판문점을 통해 서울귀환)

#### 選手 및 關係人員 南北往來 關聯事項

- 왕래절차, 휴대품 소지 등은 관례에 따르고, 滯留期間中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기타 南北往來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판문점 雙方 적십자 연락관간 협의 결정

團旗, 團歌, 團服, 運動服, 運動用品

- 團旗, 團服 : 북측에서 준비
- 團歌, 運動服, 運動用品 : 남측에서 준비
- \* 유니폼 및 스타킹 색깔은 적색과 흰색으로 준비
- \* 평가전시 트레이닝복과 경기복은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준비
- \* 단복 · 운동복 · 각종 장비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외에 다른 표지는 불가  
(단, 트레이닝복 가슴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등에는 영어로 『KOREA』 표기)

其 他

- 조편성 추첨참가 : 1991. 3.15 포르투갈 조편성 추첨회의에 雙方 蹴球協會  
代表 각 1명씩 참석
- 大會期間中 會議參加 :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雙方의 合意로 필요한  
대표가 참가
- 選手團 問題發生 : 선발선수 유고시 충원문제를 제외한 여타 문제 발생시  
단일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 해결